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63 호 2022. 9. 29.(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3호[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5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2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87호[공시송달 공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89호[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04호[공시송달 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08호[「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15호[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3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새바지산 외 3개산 1,464ha
(※ 산림면적 11,179ha의 13.09%)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 내 입산통제

3. 입산통제기간 : 2022. 11. 1. ~ 2023. 5. 15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관리 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사·관·구	읍·면·동	번지			
계				140필		1,464	
	소계			16필		171	
	새바지산	북구	효문동	산30외 9필지	효문동 산30,산26,산24,산20,산33-1, 산39, 산38-1, 연암동 산130, 산129	103	
			효문동	산32-1 외 5필지	효문동 산32-1, 산33-1, 산34-1, 산38-1 연암동 산134, 산140-1	68	
	소계			74필지		832	
	무룡산	북구	송정동	화봉동 산48외 6필지	화봉동 산48, 산47, 산49-4, 산49-2, 산35-1, 산26, 산25-1	128	
			향소1동	장평동 산69-1 외12필지	장평동 산69-1, 산65-2, 산65-7, 산46-1, 산39, 산38, 산47, 산48, 산58, 산57, 산52-2, 산55-1, 산49-1	139	
			강동동	어물동 산259외 6필지	어물동 산259, 산261, 산262, 산261-1, 산208-6, 산252-1, 산251	35	
			강동동	어물동 산208- 4외 16필지	어물동 산208-4, 산208-6, 산26-1, 산209, 산217, 산219, 산220산, 산229, 산221-1, 산150-4, 산150-24, 산150-20, 산227, 산150-22, 산150-15, 산150-12, 산150-11	152	

관리 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사·관·구	읍·면·동	번지			
계				140필		1,464	
울산북구			강동동	신현동 산222- 2외 5필	신현동 산222-2, 산200, 산204-2, 산167-3, 산167-14, 산169-5	90	
			강동동	무룡동 산159- 1외 7필	무룡동 산159-1, 산158, 산155-1, 산150, 산149-1, 신현동 산191-1, 산190	64	

관리 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사·관·구	읍·면·동	번지			
계				140필		1,464	
			강동동	대안동 산297외 5필지	대안동 산297, 무룡동 산192, 산195-1, 산195-2, 산129, 산136-2	98	
			강동동	무룡동 산206외 9필지	무룡동 산206, 산213, 산211, 산216, 산218, 산219, 산108, 산109, 산111, 산113	126	
	소계			36필지		405	
	매곡산		향소1동	매곡동 산155외 6필지	매곡동 산155, 산147, 산147-1, 산148, 산135, 산141, 산135	34	
			향소1동	매곡동 산42외 7필지	매곡동 산42, 산51, 산49, 산48, 산70-1, 산69, 산17, 산16-1	64	
			향소1동	매곡동 산30외 7필지	매곡동 산30, 산28, 산25, 산24, 산8-5	40	
			강동동	대안동 224외 10필지	대안동 224, 산288-1, 산276, 산288-5, 산278, 산282, 산293-1, 산306-1, 산309, 산313, 매곡동 산124	200	
			강동동	대안동 1110외 1필지	대안동 1110번, 1066-1번	67	
	소계			14필지		56	
	천마산		향소3동	천곡동 산133외 9필지	천곡동 산133, 산144, 산45, 산38-1, 산49, 산30, 산51, 산53-2, 산53-1	33	
			향소3동	천곡동 산53-1 외 3필지	천곡동 산53-1, 53-2, 산54, 산55	23	

□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현황

권역별	등 산 로		개방여부
	구 간	거 리(km)	
	66개 노선	158.9	
동대산	기령 ~ 대안임도 입구	5.8	개방
	평해사 ~ 신흥재	2.1	개방
	청룡암 ~ 신흥재	2.2	개방
	연지암 ~ 마동재	1.5	개방
	매곡공단 ~ 마동재	1.2	개방
	동대산 ~ 동대산큰재	1.3	개방
	수성마을 ~ 동대산	1.9	개방
	홍골저수지 ~ 무제산	2.1	개방
	원지저수지 ~ 무제산	2.5	개방
	차일마을 ~ 동대산큰재	2.3	개방
	송정저수지 ~ 동대산큰재(좌측)	4.5	개방
	송정저수지 ~ 달령재임도(우측)	2.6	개방
	동대산큰재 ~ 대안마을	7.1	개방
	동대산큰재 ~ 달령재	3.7	개방
	대안마을 ~ 기령	4.3	개방
	신흥사 ~ 신흥재임도	1.4	개방
	기령 ~ 삼태1봉	2.2	개방
	신한디아채 ~ 삼태1봉	2.0	개방
	벽산APT ~ 삼태1봉	2.2	개방
	중산농협 ~ 삼태1봉	2.2	개방
메아리학교 ~ 기령	6.3	개방	
무룡산	양정생활체육공원 ~ 진달래군락지	2.2	개방
	양정힐스테이트 ~ 임도 접점	2.7	개방
	심청골 ~ 성불암	2.6	개방
	양정경로당 ~ 갈매봉	2.4	개방
	무룡산장 입구 ~ 마골산	4.2	개방
	도솔암 ~ 달령재	3.7	개방
	달령재 ~ 달곡마을	2.1	개방
	달령재 ~ 숲속쉼터 ~ 무룡산	2.5	개방
	숲속쉼터 ~ 매봉재 음수대	1.7	개방
	화동못 ~ 매봉재(좌측)	1.9	개방
	화동못 ~ 매봉재(우측)	1.5	개방
	화동못 ~ 무룡임도	1.6	개방
	효문운동장 ~ 매봉재(좌측)	1.3	개방
	효문운동장 ~ 매봉재(우측)	1.2	개방
	상방(두부곡) ~ 매봉재	1.2	개방
오토밸리 ~ 매봉재	1.5	개방	

권역명	등 산 로		개방여부
	구 간	거리(km)	
무룡산	매봉재 ~ 무룡산	1.2	개방
	무룡임도 입구 ~ 무룡산	1.6	개방
	무룡산송신소 입구 ~ 무룡산	1.6	개방
	장등마을 ~ 무룡산	2.2	개방
	강동초등학교 ~ 쉼터	0.7	개방
	정자해수욕장 ~ 쉼터	2.5	개방
	효정고교 ~ 효문산 임도	2.6	개방
	마이스터고교~효문산 임도(좌측)	2.7	개방
	마이스터고교~개천골~효문산임도(우측)	3.3	개방
	아래울동 ~ 효문산 임도	2.5	개방
	물청천 소류지 ~ 금문산	1.2	개방
	황토전 ~ 무룡산장 입구	3.2	개방
동축산	마골산 ~ 염포임도 입구	3.9	개방
	심청골 저수지 ~ 돈문재	1.2	개방
	신전생활체육공원~염포팔각정	1.8	개방
	현대사택 ~ 염포팔각정	2.2	개방
염포산	성내마을 ~ 성내약수터	0.7	개방
우가산	강동축구장 ~ 우가산	2.2	개방
	원오사 ~ 옥녀봉	1.8	개방
	안산고개 ~ 옥녀봉	2.5	개방
천마산	달천임도 ~ 천마산	2.9	개방
	만석골 저수지(우측) ~ 천마산	1.8	개방
	만석골 저수지(좌측) ~ 천마산	1.6	개방
	천마산 정상 ~ 관문성 입구	4.6	개방
	무상사.천마산 접점 ~ 무상사	0.7	개방
	선창골.천마산 접점 ~ 선창골	1.7	개방
	천곡.천마산 접점 ~ 천곡	1.4	개방
	달천아이파크 ~ 천마산	4.7	개방
달천농공단지 ~ 산불감시초소	2.2	개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자 르 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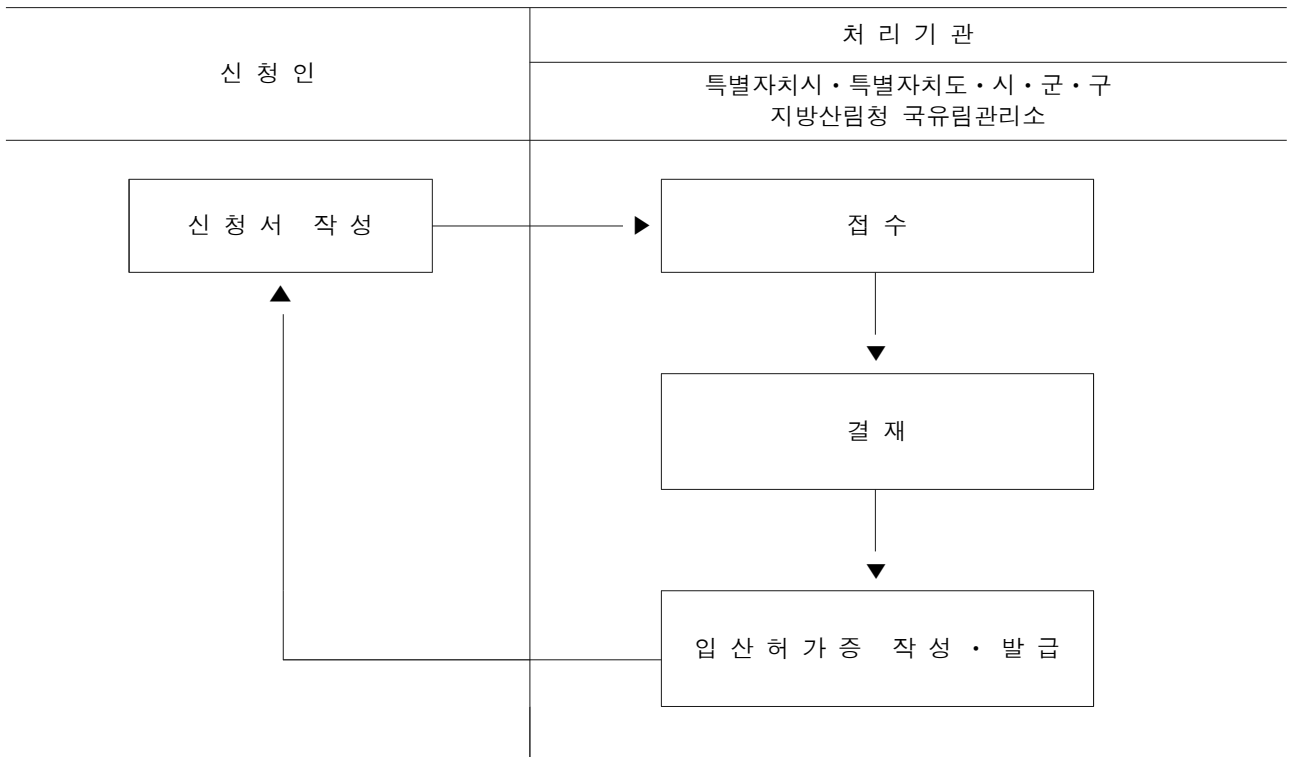
(뒤쪽)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점용 위치	명촌동 794-13번지 외 36필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 면적	5,367㎡
점용 기간	2022. 9. 27.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문화재단(김정배)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69, 2층 울산문화재단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매곡천
점용 내용	문화가 있는 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 버스킹 형식 클래식 공연 개최	점용 면적	30m ²
점용 기간	2022. 9. 28. 13:00 ~ 21: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2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무룡1로 20 외 34건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 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행정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2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0-3	2022-09-29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1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90-2	2022-09-29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1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2-3	2022-09-29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2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1-3	2022-09-29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1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95-2	2022-09-29	건축물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9-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94-4	2022-09-29	건축물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94	2022-09-29	건축물 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3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62	2022-09-29	건축물 멸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2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1-12	2022-09-29	건축물 멸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2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4	2022-09-29	건축물 멸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4	2022-09-29	건축물 멸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0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4	2022-09-29	건축물 멸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0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4	2022-09-29	건축물 멸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0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2-4	2022-09-29	건축물 멸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3-2	2022-09-29	건축물 멸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5-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5-6	2022-09-29	건축물 멸실	
17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5-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2-8	2022-09-29	건축물 멸실	
18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5-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2-2	2022-09-29	건축물 멸실	
19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2-5	2022-09-29	건축물 멸실	
20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3-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5-3	2022-09-29	건축물 멸실	
21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5-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5-3	2022-09-29	건축물 멸실	
22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9	2022-09-29	건축물 멸실	

연번	도로명주소		행정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23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9-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1	2022-09-29	건축물 멸실	
24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39-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9-4	2022-09-29	건축물 멸실	
25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3-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08	2022-09-29	건축물 멸실	
26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9-2	2022-09-29	건축물 멸실	
27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4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9-1	2022-09-29	건축물 멸실	
28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41-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0	2022-09-29	건축물 멸실	
29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1	2022-09-29	건축물 멸실	
30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4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2	2022-09-29	건축물 멸실	
31	울산광역시 북구	우룡1로 41-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8-4	2022-09-29	건축물 멸실	
32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2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8-1	2022-09-29	건축물 멸실	
33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1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4-1	2022-09-29	건축물 멸실	
34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3-2	2022-09-29	건축물 멸실	
35	울산광역시 북구	뒷연암길 1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13-3	2022-09-29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2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동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23. ~ 2022. 10. 7.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321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47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10. 7. (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289호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4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

나. 명 칭 : 송정지하차도 설치구간 송유관 이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692-6번지 일원

3. 사업규모

시설명	연 장(m)	면 적(m ²)	비고
송유설비	107.5	65.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대경로 31-27

5. 사업기간 : 2022. 3. 11. ~ 2022. 12. 31.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 052-241-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동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27. ~ 2022. 10. 11.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동	77-6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51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10. 11. (화)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08호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7조에 따라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최 목적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2. 일 시 : 2022. 10. 25.(화) 15시

3. 장 소 : 강동문화센터 4층 시청각실(북구 산하중앙3로 51)

4. 내 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 및 비전과 목표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세부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5. 기타 사항

-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방문(본관 2층), 이메일(ubdesign@korea.kr) 및 팩스(052-241-7909)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15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1. 10. 19.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6조)
-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23조)
- 마.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안 부칙)

3. 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징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징수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502, 팩스번호 : 052)241-7519

3) 전자우편(E-mail) : bukgu8225@korea.kr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지역의 특산품 선정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유통·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북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물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구 고향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 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지급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구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자

나.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답례품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9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

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